28 목재품 도매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

 성별
 나이
 53세
 직종
 목재품 도매업
 업무관련성
 낮음

1 개 요

근로자 박○○는 2005년 (주)○○우드에 입사하여 지게차 보조운전을 하였다. 2008년 6월 14일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 2008년 9월 16일 사망하였다.

2 작업내용 및 환경

(주)○○우드는 원목 및 건축자재관련 목제품 도매업체로 제조, 건설 등의 공정은 없고 작업은 구매한 목재를 창고로 운반, 적재해 두었다가 판매하는 것이다. (망)근로자 박○○는 2005년 5월 1일 (주)○○우드에 입사하여 3개월간수습 근무 후 지게차 운전 보조 작업을 수행하다가 2006년 7월 5일자로 퇴직후 2007년 4월 10일 재입사하여 지게차 보조운전을 하였다. 재입사 전까지 약9개월간은 ○○구청에서 공공근로업무를 하였다. 지게차 보조업무는 목자재가트럭으로 들어오면 지게차 기사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목재를 창고나 야적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적재를 돕는 등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다. 또 거래업체에서 자재 구입의뢰가 오면 구입처별로 자재를 트럭에 적재할 수 있도록 묶는 작업을 하는 일과 창고 주변 정리 및 청소작업 등을 하였다. 목재방부제는 과거에 사용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ACQ(Alkaline Copper Quaternary 구리,알킬암모니움 화합물) 목재방부제와 CQAZ(구리, 아졸화합물계) 목재방부제를취급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최근에 사용한 것은 비소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. 작업환경측정결과 중금속, 포름알데히드, 혼합유기용제, 흡입성 분진이 모두 노출기준 이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

(망)근로자는 (주)○○우드 입사 전 유해인자에 노출될만한 직업력이 없었다. 2007년 12월 코막힘 및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건강하였다고 하며 비호지킨림프종 등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간염 등의 질병력은 없다고 한다. 일주에 2-3회 음주를 하였으나 발병 3개월 전 금주하였고, 담배도 3일에 1갑 정도 피웠으나 3개월 전부터 금연하였다고 되어 있다. (망)박○○의진단명은 ○○병원의 기록에 의하면 우측 비강의 종양(비호지킨림프종, extranodal NK/Tcell lymphoma)이다. 진료기록에 정확한 진단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(환자가 두통, 열 등으로 응급실 방문하였다가 자의 퇴원하였다가 약 1-2주 후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) 2008년 6월 14일 첫 입원하였다. 이후 6차례입원치료 받다가 2008년 9월 16일 사망하였다.

4 결 론

(망)근로자 박ㅇㅇ의

- ① 근로자가 최대 3년 동안 비호지킨림프종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종 인 목재취급 업무에 종사한 것은 인정되나,
- ② 목재취급자에서 비호지킨림프종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목재분진이나 목재연소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, 노출되었다고 하 여도 농도가 낮고 기간이 암을 일으키기에는 매우 짧은 것으로 판단되며,
- ③ 망인의 암을 비강 등에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포름알데히드와의 관련성을 판단하여도 노출량과 노출기간이 역시 암을 일으키기에는 짧으며, 비강에 생겼다고 하여도 비호지킨림프종이라 비강암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,

(망)근로자 박〇〇의 비호지킨림프종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